



## 國內事件

### 商標登録 無効判例

〈大法院 第1部 判決〉

裁判長: 大法院 判事 이	병	호
關與判事: " 주	재	황
" " 임	항	준
" " 라	길	조

# 国内外審判判例

〈XIII〉

編輯室

1. 事件: 74후 67 商標登録 無効
2. 審判請求人(被上告人): 에쓰 이스턴 인코포레이티드(美國 텍사스  
주 휴스턴市) 代表者 F.X. 크레아  
代理人 辦理士 車淳英
3. 被審判請求人(上告人): 한상덕(서울 西大門區 鷹岩洞 3의 2)
4. 原審決: 特許局 1974. 11. 8. 字 1973年 抗告審判 375審決

#### 5. 主文

上告를棄却한다.

上告費用은 審判請求人の負擔으로 한다.

#### 6. 理由

被審判請求人の上告理由를 判斷한다.

#### 第1點

原審이 그 摘示한 證據資料에  
의하여 本件商標의 出願前에 被  
審判請求人の 商標(引用商標)에 관  
한記事가 原審決에 적시된 美國  
의 雜誌와 新聞에 각각掲載되어 우  
리나라에도 들어와 있었고 世界最  
大의 石油會社의 商標인 事實을 認  
定한 후 本件商標과 同一하다고 할  
정도로 類似하니 본건 상표를 사용  
하면 一般需要者は 마치 引用商標  
權者が 그 商品을 生產한 것 같이  
誤認混同할 憂慮가 있다는趣旨로  
判斷하기 쉽다.

때문에 본건상표는 舊商標法 第5  
條 1項 2號에 該當하므로 同法 24條  
의 規定에 의하여 그 登錄을 無効로  
하여야 할 것이라는 취지로 판단하  
고 있는바 原審이 위의 認定事實과  
판단을 記錄에 나타난 증거자료에  
對備하여 檢討하니 본건상표와 同

種商標를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본  
건상표가 먼저 등록된 상표라 하더  
라도 위 원심의 판단대로 구상표법  
제5조 1항 8호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故로 원심의措置는 適法하여 訴  
論商品을 類別主義와 先願主義 등  
에 관한 각 法令에 違背된 점이 없  
으므로 論旨는 理由없다.

#### 第2點

原審이 그 審決理由에 적시한  
증거자료를 검토하니 인용상표가  
우리나라를 위시한 全世界的으로  
著名한 상표로 인정한 원심의 조  
치는 適法하여 訴論審理 未盡이  
나 理由矛盾의 違法事由가 없으므  
로 本旨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關與法官의 一致된 意  
見으로 主文과 같이 判決한다.

# 國 外 事 件

## 不正競争防止 등 請求事件 (上)

〈日本 東京地裁 民事 第29部, 1970.  
第12456號, 1974. 12. 23. 判決〉

1. 原 告: 株式會社 東武ストア
2. 被 告: 東武食品工業株式會社
3. 判決主文

原告의 請求를 棄却한다.

訴訟費用은 원고의 負擔으로 한다.

### 4. 事 實

原告訴訟 代理人은 ① 피고는 그 店舗에 「東武ストア」라고 表示하여 營業하고 宣傳用 撒紙 및 包裝紙 등에 「東武ストア」라고 표시하여 加工食品, 鐵物匣, 家庭用器具 및 電氣器具의 販賣를 해서는 안된다.

피고는 그 점포, 商品, 宣傳用 撒紙 및 포장에 있어 前記의 표시를 抹消하고 또는 그 표시가 있는 상품, 선전用 살지 및 포장을 廢棄하라.

② 피고는 朝日新聞, 讀賣新聞, 日本經濟新聞의 各 東京本社版에 表題, 會社名 및 代表者名을 各 2倍活字, 그 외는 1倍活字로 써 別紙記載(省略)의 謝罪廣告를 各 2回 揭載하라.

③ 訴訟費用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請求하여 그 청구의 原因으로서 다음과 같이 陳述하였다.

A. 원고는 1960년 12월 10일 設立되어 物品과 食料品 등의 販賣를 수퍼스트아形式으로 하는 事實을 營業內容으로 하여 設立以來 主로 團地, 市街地의 顧客을 對象으로 하여現在 東武電鐵, 國鐵 京濱東北線의 各沿線에 合計 12의 채인스토아가 있으며 訴外 東武電鐵株式會社, 株

원고는 그 뒤 1963년 1월 21일에 松原店, 1964년 11월 7일에 花畠店, 1965년 4월 1일에 西大和店, 그해 6월 20일에 田島店, 1966년 12월 1일에 成増店, 1967년 7월 9일에 武里店을 잇달아 수퍼마켓式의 스토아로 開店하고 이를 개점에는 어느 것도 東武스토아 명칭의 立看板, 애드벌룬 등으로 宣傳했다.

C. 피고는 本店을 住所地에 두고 加工食品, 鐵物雜貨, 家庭用器具 및 電氣器具의 販賣를 目的으로 한 資本金 2,000萬圓의 會社이며 前記物品의 판매에 대해 다음 표시를 사용하고 있다.

① 店舗에 東武ストア라고 표시한 것을 揭示하였다.

② 包裝用紙 및 주머니에 東武ストア라고 표시하여 이를 商品의 포장에 사용하였다.

③ 撒紙廣告에 東武ストア라고 표시하고 이를 一般顧客에 配布하였다.

D. 피고가 사용하는 東武ストア의 표시는 원고의 商號 또는 원고의 通稱으로 널리 인식되어 있는 前記 東武ストア 또는 東武수퍼스트아의 표시와 類似하다.

따라서 피고의 前項 ② 내지 ④의 行爲는 피고의 점포 또는 그 영업이 원고의 점포 또는 그 영업인 양 일반고객에게 誤認混同을 일으키게 하는 것이다.

E. 피고의 前項 行爲에 따라 원고는 그 영업상의 利益이 侵害될 염려가 있으며 또한 영업상의 信用이 침해되었다.

그 具體的인 例는 다음과 같다. 즉, 1971년 5월 15일 오전 6시 20분쯤 피고 회사의倉庫에서 불이 일어 이것이 原因이 되어 周邊住宅 등 20여채가 燃失되고 東上線이 一時不通이 되는 不祥事が 일어났는 바 이 사실이 有名新聞 2個社에 寫眞까지 揭載되어 이記事 중에 東武ストア의 명칭이 나온 까닭에 去來關係者들로부터 問議電話가 殺到함으

로써 원고회사는 信用이 크게 失墜되었다. 또 어느 때는 피고회사가 판매한 不良品의返品請求 등이 있었다.

따라서 원고는 不正競爭防止法 第1條 第1項 第2號, 第1條의 2에 의거하여 피고에게 請求趣旨記載와 같이 판결을 청구한다.

한편被告訴訟代理人은 答辯 및 抗辯으로서 다음과 같이 陳述하였다.

① 請求原因 第1項 가운데 원고가 1960년 12월 10일 設立된 株式會社이며 그 설립당초의 상호는 株式會社 東武會館이었으나 1968년 4월 19일 그 상호를 現 商號로 變更한 것은 모두 認定하나 그의 사실은 모르겠다.

② 請求原因 第3項은 인정한다.

③ 請求原因 第4項의 主張은 繫爭하겠다.

④ 請求原因 第5項 가운데 피고의 행위에 의해 원고가 그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될 염려가 있다는 사실은 모르겠다.

⑤ 訴外 東武食品工業(株)는 1939년 3월 27일 設立된 회사이나 1952년 쯤 피고회사의 현재의 营業所所在地에서 東武百貨店의 명칭아래 마

켓形式에 의해 食品, 化粧品, 雜貨類의 판매를 营爲했으나 당시 그 주변은 물론 東上線 沿線에도 東武라고 하는 명칭을 붙인 마켓형식의 점포는 東武百貨店以外에 전혀存在하지 않았다.

1960년 5월 쯤 訴外會社는 업무의擴張, 發展에 따라 從前의 점포가 좁아졌기 때문에 그 점포 앞 道路를 사이에 둔 전너편에 새로이 점포를開設하여 東武百貨店을 개설하고 東武百貨店 雜貨部를 移轉하였다가 그 뒤 곧 이전된 점포에서 東武스토아라는 표시로 영업활동을 시작하였다.

피고회사는 1965년 10월 5일 設立된 前記 訴外會社와 任員을 거의 同一하게 하는 이른바 同族會社인 바설립할 때에 소외회사가 경영하고 있던 前記 東武百貨店 및 東武스토아의 영업을 讓受한 것이다.

그리하여 1965년에 피고는 종전의 東武百貨店으로서 경영하고 있던 점포 소재지에 빌딩을 新築하고 종전의 東武스토아 이름의 점포와 더불어 東武스토아의 표시를 사용하여 식품, 잡화, 家具, 洋品 등의 판매를 영위하게 되었다.

이상과 같이 東武스토아의 표시

는 1960년 5월 쯤부터 東武食品工業(株)가 사용한 명칭이며 더우기 이 회사는 그 뒤 東武百貨店 및 東武스토아의 명칭아래 적어도 年 3-4回는 在庫商品의 大賣出을 했고 그때마다 新聞에 插入 또는 撒紙 등의 배포로 宣傳해 왔다. 또 東上線 沿線에서 東武스토아의 표시는 東武食品工業(株)가 경영하는 점포로서 일반에게 널리 인식되어 있었고 더우기 納品業者도 이 회사에 상품을 납품함에 있어 納品書, 請求書, 領收證 등에 東武食品工業(株)貴下라고 記載하느니보다 東武스토아 貴下라고 기재하는 例가 많았으므로 납품업자에 대해서도 東武스토아의 명칭은 東武食品工業(株)의 영업을 표시하는 명칭으로서 널리 인식되고 있던 것이다.

원고는 명칭을 사용하게 된 지 約 8년 뒤 더우기 東武스토아의 명칭이 東武食品工業(株)의 영업을 표시하는 명칭임이 주변의 顧客에게 널리 인식된 뒤에 突然 商號를 (株)東武스토아로 變更한 것이며 영업의 誤認混同에 따라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된 것은 원고보다 피고이므로 원고의 本訴는 失審이다.

〈계속〉

## ◇ 特協의 役割 ◇

- |                 |                  |
|-----------------|------------------|
| 一. 工業所有權情報의 媒體  | 一. 工業所有權運用効率化 誘導 |
| 一. 新技術開發役軍의 養成  | 一. 國內外技術交流의 窓口化  |
| 一. 發明獎勵 및 實用化促進 | 一. 制度改善方向의 提示    |

## □ 工業所有權은 無體 財產權입니다.

모든 企業은 工業所有權을 바탕으로 技術革新과

對外競爭力を 強化해야 할 것입니다.